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중 훈(02-2100-2990)	담 당 자	유 원 규 사무관 (02-2100-2992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정 용 결(02-3145-7550)		문 재 희 팀장 (02-3145-7552)
	여신금융협회 본부장 배 중 균(02-2011-0602)		이 경 원 부장 (02-2011-0742)

제 목 : 2021년 상반기 영세·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

- ① '21년 상반기 영세·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,
 ①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**278.6만개**(전체의 96.1%)
 ②결제대행업체(PG)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**109.3만개**(전체의 91.2%)
 ③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**16.5만개**(전체의 99.9%)에게 우대수수료(0.8~1.6%)가 적용됩니다.
- ② 또한, '20년 7월 1일부터 '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**가맹점 약 19만개**에 대해서는
-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, 그 규모는 **약 499억원(가맹점당 26만원)** 정도로 추산됩니다.

1 2021년 상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 대상 선정 결과

- ① (신용카드가맹점)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·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
- **278.6만개의** 신용카드가맹점(전체 290.0만개 중 **96.1%**)에 대해 '21년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

구분	연간 매출액	적용 수수료율	
		신용카드	체크카드
영세가맹점	3억원 이하	0.8%	0.5%
중소가맹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.3%	1.0%
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.4%	1.1%
	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.6%	1.3%

○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·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(75.2%), 중소가맹점은 60.6만개(20.9%)입니다.

* 2020년 하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4.2만개 ↑, 중소가맹점 대비 0.1만개 ↑

○ 여신금융협회는 '21년 1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*이며,

*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음

- 여신협회 콜센터(☎02-2011-0700)나 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(이하 '매통조）」*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합니다.

* (인터넷 접속시) www.cardsales.or.kr (모바일 어플리케이션) 카드매출조회

【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】

① 인터넷 홈페이지

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“마이페이지” 접속 → ② 마이페이지에서 “가맹점 수수료율”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

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

① 마이페이지 → ② 수수료율/대금지급주기 → ③ 가맹점수수료율 → ④ 사업자번호 클릭

② (PG 하위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)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 대행업체(PG)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
- 영세·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**109.3만명(91.2%)**, 개인택시사업자 **16.5만명(99.9%)**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

* 2020년 하반기 영세·중소 온라인사업자 대비 16.1만개↑, 개인택시사업자 대비 54개↓

-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2 2020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

□ (제도 개요) 2020년 하반기 중('20.7.1.~'20.12.31.)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*받다가 금번('21. 상반기)에 영세·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,

*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

- 각 카드사에서 **21년 3월 17일**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(기납부 수수료 - 우대수수료)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, 금번 환급규모는 약 **19만개** 가맹점에 대해 **499억원**으로, **가맹점당 26만원** 수준으로 추산됩니다. (☞ 상세 예상효과 : 5p 참고)

□ (환급 대상)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.

- 참고로,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,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*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,

* (예) 2020년 7월 ~ 2020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0년 12월 31일 전 폐업

-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**2021년 3월 12일부터**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【환급대상 안내문 예시】

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적용 안내

[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]

구분	신용카드	체크카드
영세가맹점 (연 매출액 3억원 이하)	0.8%	0.5%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3~5억원)	1.3%	1.0%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5~10억원)	1.4%	1.1%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10~30억원)	1.6%	1.3%

이에 따라 귀 가맹점은 **2021년 1월 31일(일)부터 영세가맹점**으로 선정되어 **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0.5%**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 가맹점은 2020년 하반기에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신규가맹점으로, 카드사는 금번에 한해,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이전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*할 예정입니다.

* 단, 카드매출이 없었거나 현재 수수료율이 안내된 우대수수료율 보다 낮은 경우, 환급액이 없을 수 있음

※ 상기 우대 수수료율과 수수료 환급 금액(*21.3.12.(금) 이후 확인 가능)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「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」(www.cardsales.or.kr)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【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】

① 인터넷 홈페이지

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

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"수수료 환급액 조회"
 * (인터넷 접속시) www.cardsales.or.kr (모바일 애플리케이션) 카드매출조회

- (환급액)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드리며,

◆ 환급액 =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 × (기존 수수료율 - 우대수수료율)

-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,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별·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 2020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1년 3월 12일부터 확인 가능

【환급 관련 정보 안내】

구분		확인 가능한 정보
협회	매통조	▶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
카드사	홈페이지	▶ 일별·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, 수수료율, 환급 금액

【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】

구분	전화번호	구분	전화번호
여신금융협회	02)2011-0700	하나카드	1800-1111
현대카드	1577-6000	KB국민카드	1588-1788
NH농협은행	1644-7400	씨티은행	1566-1000
롯데카드	1588-8100	비씨카드	1588-4500
삼성카드	1588-8700	신한카드	1544-7000

3 2020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(잠정)

*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

- **(환급대상)**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19.8만개로 이중 **약 95.8%인 19만개**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.

【신규가맹점 분포 현황 (자료:여신협회, 잠정)】 (단위 : 만개)

구분	전체 신규 가맹점	일반가맹점 등 환급 비대상	영세 (~3억원)	중소			환급대상 전체
				3~5억원	5~10억원	10~30억원	
가맹점수	19.8	0.8	16.7	1.1	0.8	0.4	19.0
비중	100%	4.2%	84.1%	5.5%	4.1%	2.0%	95.8%

- **(환급액)** 환급규모는 **약 499억원**(신용 380억원, 체크 118억원)으로 전체 금액의 **약 70%**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,
 -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**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** 수준*으로 예상됩니다.

*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,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/체크카드매출액,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

【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 (자료: 여신협회, 잠정)】

(단위 : %, 억원)

구분	영세 (~3억원)	중소			계	
		3~5억원	5~10억원	10~30억원		
하반기 (A)	기납부수수료율 (추산, 일반가맹점 수준)	(신용) 2.23 (체크) 1.43			998	
	수수료 부담	544	156	169		129
우대 시 (B)	우대수수료율	(신용) 0.8 (체크) 0.5	(신용) 1.3 (체크) 1.0	(신용) 1.4 (체크) 1.1	(신용) 1.6 (체크) 1.3	500
	수수료 부담	194	95	111	100	
환급액(A-B)		350	61	58	29	499

* 수수료부담액은 '20.7월~'20.12월 발생한 환급대상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'20.7월~'21.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추산
→ 실제('21년 3월중 산출 예정)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</p>	 <p>질병관리본부 콜센터</p>	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